

인사규정 개정에 이견 없이 동의함

2015.4.8

케이티 노동조합

위원장 정 윤 모 (인)



【인사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】

현 행	개 정	비 고
제28조(정년) ① 직원의 정년은 <u>58세</u>로 한다. 다만, 예비군지휘관, 비상대비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되어 해당 직무를 수행 중인 직원의 정년 및 근무기간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 ② 직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<u>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7월 1일에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익년도 1월 1일에 각각 당연퇴직</u> 된다. 다만,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직원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연 퇴직된다.	제28조(정년) ① 직원의 정년은 <u>60세</u>로 한다. 다만, 예비군지휘관, 비상대비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되어 해당 직무를 수행 중인 직원의 정년 및 근무기간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 ② 직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의 <u>익월 1일에 당연퇴직</u> 된다. 다만,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직원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연퇴직 된다.	정년연장 퇴직시점 변경

※ 부칙 (2015. XX. XX)

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